

---

#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(안)

---

2025. 3.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# 목 차

I.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의의 및 근거	1
II. '25년도 제도개선 기본방향(안)	3
1. '25년도 제도개선 주안점	3
2. 세부 추진방향(안)	3
① 연구현장 수요 기반 제도개선	4
② 선도형 R&D 제도 기반 마련	4
③ 旣 개선된 제도의 보완 지속	5
III. 향후 추진계획	6
붙임. 제도개선 의견 제출 양식	7

# I.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의의 및 근거

## 1 의의

- 현장 중심의 선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수요에 기반한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\*(이하 '연구제도') 개선
  - \* 혁신법 및 그 하위규정, 각 부처의 소관 관련 법령·시책 등을 포괄하는 의미
  - 연구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책임성과 자율성 기반의 연구개발 제도를 마련
  - 연구개발 성과제고 및 선도적 연구 촉진을 위해 연구제도의 합리성 제고
  -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연구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·고도화

## 2 근거 : 「연구개발혁신법」 제28조~제30조

- (법 제28조) 정부는 매년 이해관계인·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, 누구든지 연구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
- (법 제29조) 연구제도 개선의 체계화된 절차 제시
  - (제1항)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작성(과기자문회의 심의)하고 3월31일까지 관계부처에 통보
  - (제2항) 관계부처, 연구기관 등은 기본지침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4월30일까지 제출
  - (제3항)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(과기자문회의 심의)하고 8월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
  - (제4항) 부처별로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소관 연구개발행정제도에 반영
- (법 제30조) 연구기관 등의 내부규정과 활동에 대해 개선 권고(과기자문회의 심의)하고, 이행 실태 확인·점검

## 〈 추진 경과 〉

- 국정과제 및 「국가 R&D 혁신 방안」 발표 (‘18.7.26.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)
  - ※ (‘17) 국정과제 35. ‘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’
  - 연구자 중심 R&D 지원 시스템 혁신을 위해 부처별 제각각인 R&D 규정을 정비하여 범부처 적용 법률 제정을 추진
- 「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」 발의 (‘18.12.18.)
  - ※ 「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」 국회 입법공청회(‘19.7.2.) 등 의견수렴(총 32회)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시행령 시행 (‘21.1.1.)
- 연례 「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(안)」 마련 및 법령 등 개정 (‘21~)

### < 연도별 주요 개선 내용 >

연도	주요 내용
202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제 종료 후 논문 등 출판비용 지원, 연구노트 형식 등 자율성 제고</li> <li>○ 경쟁형 R&amp;D 활성화를 위해 조기 중단 근거 마련 등</li> </ul>
202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상향, 해외 우수연구자 체제비 등 지원</li> <li>○ 출연연 기본사업 수행을 위한 해외파견비용 지원 등</li> </ul>
202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제공동연구 매뉴얼, 서식, 동시수행 과제 수 적용 예외 기준 마련</li> <li>○ 국외 수혜 정보 관리 체계 구축 등</li> </ul>
202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학생인건비 기관 단위 관리 확대 및 잔액 제도 개선</li> <li>○ 육아휴직 연구자 퇴직급여충당금 등 지원, 초기 중견기업 부담 완화 등</li> </ul>

- '25년 제도개선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(‘25.1~2월)
  - ※ (권역별 간담회) 충청권(1.13.), 호남권(1.15.), 영남권(1.20.), 수도권(1.24.)
  - (연구지원인력 간담회) 출연연(2.4.), 대학(2.5. 오전), 과기특성화대(2.5. 오후)

### < 연구현장의 주요 개선 의견 >

- ❶ 제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고려될 수 있도록 촘촘한 의견수렴 필요
- ❷ 고위험·혁신형 연구에 맞는 기획·관리 및 평가 필요
- ❸ 선도적 R&D가 가능한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지원 역량 강화 필수
- ❹ 이미 개선된 제도라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현장 만족도 제고 필요

## II. '25년도 제도개선 기본방향(안)

### 1 '25년도 제도개선(안) 주안점

<b>As-Is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주로 연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견수렴</li> <li>▶ 제도개선 이후에는 교육·설명에 그치는 소극적 현장 안착 노력</li> </ul>
<b>To-Be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(의견수렴 확대)</b> 다양한 대상, 채널로부터 개선 수요 발굴 및 종합 검토</li> <li>▶ <b>(만족도 제고)</b> 旣 개선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해소 노력 지속</li> </ul>

- (목표) '선도적 R&D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'이라는 전제 하에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연구제도를 찾아 개선방안 마련
- (추진방향) 연구현장이 원하고,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는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, 시행 후 완전한 현장 안착까지 지속적 보완

### 2 세부 추진방향(안)

<b>목표</b>	<b>선도형 R&amp;D를 저해하는 낡은 연구제도 발굴 및 개선</b>				
<b>추진 방향</b>	연구현장이 원하는 <b>연구현장 수요 기반 제도개선</b>	⇒	정책목표에 부합하는 <b>선도형 R&amp;D 제도 기반 마련</b>	⇒	끝까지 책임지는 <b>旣 개선 제도의 보완 지속</b>
<b>추진 전략</b>	대상·채널 다양화 등 의견수렴 대폭 강화  기존 축적된 현장수요 종합검토	현장 주도 혁신을 촉진하는 유연성 강화  연구몰입을 저해하는 행정규제 완화 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효율성 제고	개선된 제도에 대한 현장 반응 조사·검토  보완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 부처·기관별 규정 미비점 정비		

## ① 연구현장 수요 기반 제도개선

### 기본 방향

- 연구기관의 특성, 주체별로 다른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고려
-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된 제도개선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 및 반영

As-Is		To-Be
▶ 산·학·연 연구자 중심 의견수렴	➤	▶ 의견수렴 대상을 확장하고, 주체별 간담회, 실무협의체 등 확대
▶ 제도개선 정기 의견제안 기간 내 접수된 수요를 중심으로 개선 필요성 검토	➤	▶ 규정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현장수요까지 종합하여 일괄 검토

- 연구행정인력, 신진 연구자 등 대상을 세분화하고, 간담회, 실무협의체 등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의견수렴 대폭 강화
- 민원 해소, 규정 해석 및 개정, 설명회 및 교육 등 규정 운영 과정에서 기존에 제기된 수요를 일괄하여 종합 검토

## ② 선도형 R&D 제도 기반 마련

### 기본 방향

- 다변화되는 연구환경과 수행 방식을 고려해 관리 절차 및 기준 유연성 제고
- 연구자 행정부담은 줄이고, 연구지원 행정의 효율성은 높이는 개선안 마련

- 과제기획, 선정, 수행, 평가 및 성과 관리 등 전주기에 걸쳐 현장 주도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 유연성 강화

- 성공 가능성보다는 혁신성에 중점을 둔 과제기획, 기존과 다른 방식의 과제수행 등을 가로막는 경직적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중점
- 혁신법령에 명시적 규제가 없음에도 현장에서 보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적극 발굴, 매뉴얼 등을 통한 유권해석 제공
- 연구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행정절차\*를 간소화하고, 현실과 맞지 않는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\*\*를 개선
  - \* (예시) 연구시설장비 변경 시 증액이 아닌 감액의 경우에도 사전승인 필요  
→ 현장에서는 당초 계획금액 초과 시에만 승인사항으로 운영 요구
  - \*\* (예시) 소프트웨어 구독 시 연 구독이 저렴함에도 연구기간 내에만 구독이 가능해 월 구독만 인정
- 연구실 안전, 보안, 시설·장비 관리 등 점점 강조되고 있는 연구 지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
  - ※ (예시) 연구지원체계평가 및 간접비 산출 절차 개선, 간접비 용도 개선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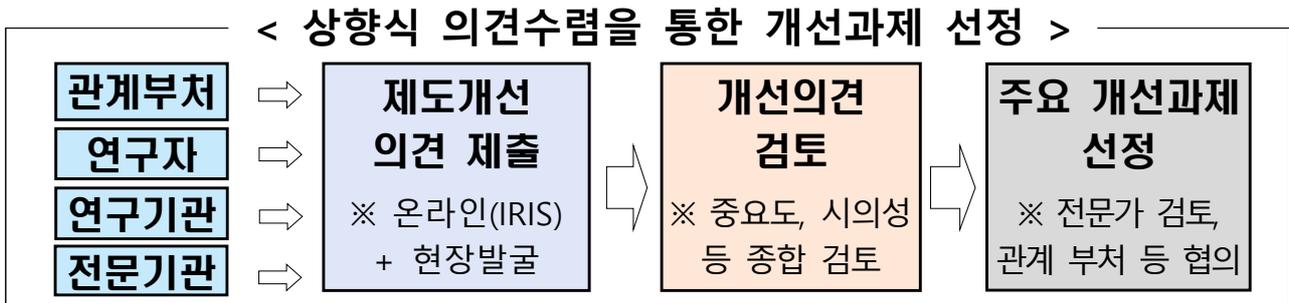
### ③ 既 개선된 제도의 보완 지속

#### 기본 방향

- 개선된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후속 보완조치 추진
- 혁신법 및 제도개선 취지가 부처별로 다르게 전달되지 않도록 점검

- 제도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현장의 부담과 운영상 문제점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 보완
  - 그간 제도개선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사항\*들을 검토하여,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 추진
  - \* (예시) '24년 인건비계상률 산식을 현실화(급여만 포함 → 기관부담 4대 보험, 퇴직금 등 인건비성 경비 모두 포함)하였으나, 행정인력들은 관리 부담을 호소
  - 부처·기관별 제도가 혁신법 및 제도개선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를 발굴하여, 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

### Ⅲ. 향후 추진계획(안)



#### ① 연구현장 및 관계부처의 제도개선 의견 수렴 (4월 ~ 5월)

- 연구현장과 부처(전문기관) 등은 기본지침에 따라 '제도개선 의견 제안서'(붙임)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제안
  - 기본지침에서 제시한 방향 외 다양한 개선방안도 제안 가능
- 온라인 소통창구\*, 현장방문, 간담회 등 소통창구를 통해 의견수렴
  - \* 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R&D신문고에 '혁신법 개선 제안' 게시판 운영

#### ② 중요도·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(안) 마련 (6월 ~ 8월)

- 개선 수요의 시의성, 중요도, 연구현장의 공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과제로 반영 여부 결정\*
  - \*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개선수요 검토
- 기 개선된 제도의 부처별 적용 등 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추진 필요시 차기 제도개선에 환류하여 계속 개선
- 관계부처·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제도개선(안) 심의·확정

#### ③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 (9월 ~)

- 규정 개정, 매뉴얼 마련, 부처별 소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다음년도 시책에 반영
- 개선사항 안내를 위한 설명회, 연구개발제도 교육 등 실시

○○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제안서

구분	부처명	부서명	직위	이름	전화번호
주관기관	○○부	○○과	과장	-	-
			사무관	-	-
유관기관	○○진흥원		본부장	-	-
	-		-	-	-

<b>1. 제안명:</b>	
<b>2. 관련 근거</b>	※관련 법령 및 자체 규정 등
<b>3. 제안 목적</b>	
<b>4. 현황 및 문제점</b>	※ 제도운영 현황 및 문제점 요약 기술
<b>5. 발굴경로</b>	□ 연구자 민원, □ 정책연구, □ 자체조사(설문, 통계 등), □ 업무처리과정 중 자체 발굴, □ 기타 ※선택한 항목 관련 자료를 [붙임]으로 제출
<b>6. 개선 의견</b>	※ 제도 개선 방안 요약
<b>예시</b>	※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시
<b>7. 규정 개정안</b>	※ 규정명, 조항, 전후대조가 가능하도록 기재
<b>8. 기본지침의 개선 방향과의 관련성</b>	
<b>9. 기대효과</b>	

※ 표로 작성이 어려울 경우 1~9번 항목을 구분하여 자유형식 작성 가능